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439

발의연월일: 2024. 9. 30.

발 의 자:문진석·조인철·박성준

이연희 • 양문석 • 김윤덕

이재관 • 김문수 • 장종태

강훈식 • 박용갑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 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, 임대기간, 주택의 수,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 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 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 는 공공주택에 대하여는 임대기간, 주택 수,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"제1호의"를 "제1호 및 제1호의2의"로 한다.

1의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(지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과세표준) ① (생 략)	제8조(과세표준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	
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	
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	
하는 것으로 본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의2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
	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
	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
	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(지
	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
	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는
	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
	공공주택
2. <u>제1호의</u> 주택외에 종업원의	2. 제1호 및 제1호의2의
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	
사 및 사원용 주택, 주택건설	
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	
있는 미분양주택, 가정어린이	
집용 주택, 「수도권정비계획	
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	

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
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
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
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주택. 이 경우 수도권
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
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
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
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
는 분에 한정한다.

③ ~ ⑤ (생 략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